파비와 함께 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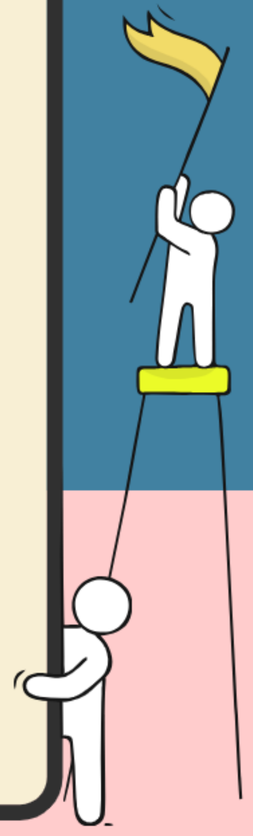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24.7.24. 시행된 전파법에 따라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Q1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자기적합확인'은 측정·검사용, 산업·과학용, 기기간 전자파영향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을 국내 기술기준(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한 후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선언서 작성)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험 > 선언서 작성 > 공개(연구원 홈페이지) > 표시 > 유통,수입

Q2

자기적합확인을 해야하는 제품을 알려주세요!

A) 자기적합확인 대상제품은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생활가전기기·전기전동공구·오디오기기·비디오기기·사무용기기, 조명기기류, 측정·검사·계측기기 등이며 구체적인 대상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자기적합확인 제품의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어디인가요?

A) 자기적합확인 제품은 ① 전파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MRA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을 포함) ② 자기적합확인하는 자가 스스로 또는 ③ ISO/IEC 17025를 만족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 ISO/IEC 17025'란? 기술인력, 필요설비 및 시험장 등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적 요구조건에 대한 국제표준입니다.

Q4

외국 인증(CE, FCC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은 자기적합확인이 가능한가요?

A) 제품이 외국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기적합확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국내 기술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시험한 경우에만 자기적합확인이 가능합니다.

Q5

외국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성적서로 자기적합확인이 가능한가요?

A) 외국 제조사가 국내 기술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으로 제품 시험을 한 경우에는
수입자가 외국 제조사로부터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공받아 자기적합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의 모델명과 동일한 모델명으로 자기적합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Q6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기자재명칭, 모델명, 외관사진,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등 자기적합확인 기자재의 정보를 기재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회사 날인도 가능하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가능)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자기적합확인하는 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Q7

자기적합확인 공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www.rra.go.kr) 접속

메인 화면 - '자기적합확인공개' 배너 클릭

자기적합확인 공개 시스템으로 연결

'자기적합확인 공개' 배너 클릭

※ 공개시스템 이용 매뉴얼 :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사항-(제목) 자기적합확인 공개시스템 이용 안내 게시 참조

Q8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호(또는 성명) ② 기자재 명칭 ③ 기본모델명 ④ 파생모델명 ⑤ 기자재 관리번호
⑥ 적합성평가기준 ⑦ 제조자 ⑧ 제조국가 ⑨ 기자재 외관사진
⑩ 동일기자재 자기적합확인 해당 여부

※ 시험성적서도 공개가 가능함(의무 공개사항은 아님)

시험성적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용 1부(시험성적서 표지부 및 종합의견만 추출 가능)와 행정기관 제출용 1부(시험성적서 전체)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험성적서를 공개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보관 생략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호)

Q9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자기적합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자기적합확인은 제조·수입·판매자가 스스로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고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적합성평가가 된 것으로 봅니다. 자기적합확인은 적합인증이나 적합등록처럼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증명서(적합인증서 혹은 적합등록필증)를 받급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 자기적합확인은 행정기관에 신청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는 스스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Q10

제품에 표시(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 표시)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A) 자기적합확인을 한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① KC마크 ② 기자재 관리번호 ③ 모델명을 표시하고,
④ 상호(또는 성명) ⑤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⑥ 제조시기 ⑦ 제조자 및 제조국가
⑧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http://www.rra.go.kr/selform/관리번호)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제공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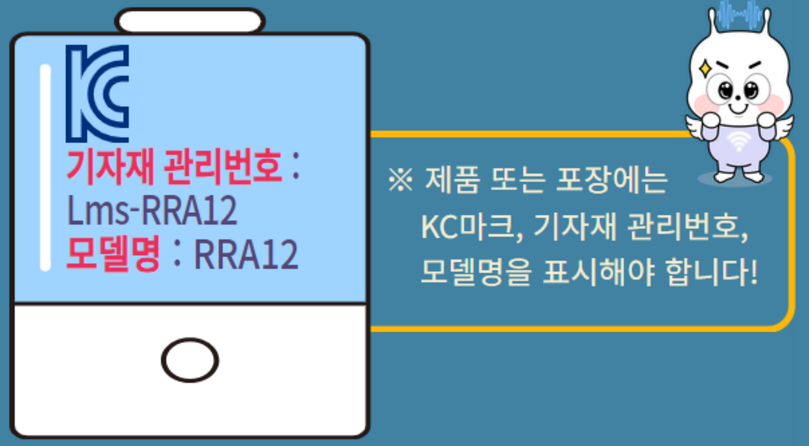

※ 제품 또는 포장에는 KC마크, 기자재 관리번호, 모델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명 : (주)RRA
기자재명칭 : 무선가습기
제조시기 : 2024년 10월
제조자 : (주) 제도
제조국가 : 대한민국
http://www.rra.go.kr/selform/Lms-RRA12

※ 상호명,기자재명칭, 제조시기, 제조자, 제조국가,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사용자 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Q11

상호명은 사용자설명서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에만 표시해야 하나요?

A) 자기적합확인한 제품의 상호명, 기자재명칭, 제조시기, 제조자, 제조국가,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표시 사항	표시 위치	
	적합인증·적합등록 기자재	자기적합확인 기자재
KC마크, 기자재 고유번호 (인증·등록·관리번호), 모델명	제품 또는 포장	제품 또는 포장
상호(또는 성명), 기자재명칭, 제조시기, 제조자, 제조국가		사용자설명서 또는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등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 가능)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rra.go.kr/selform/기자재관리번호)	표시 안함	

Q12

자기적합확인한 제품의 제조국가가 추가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자기적합확인한 제품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변경된 사항에 맞춰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7조(변경사항의 범위 등)에 따라 ① 회로의 변경이나 구성품의 추가 등으로 변경사항과 관련한 기술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시험해야 하는 경우(고시 제17조제1항), ② 파생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상호 변경 등 유지·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고시 제17조제2항), ③ 자기적합확인한 제품의 구성품 제거나 동일한 종류의 수동소자로 대치하는 등 기준과 관련없는 변경이 있는 경우(고시 제17조제3항)에는 선언서 재작성 및 변경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 고시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선언서 재작성 및 변경사항 공개를 생략할 수 있어요!

※ 변경사항을 공개하는 방법은 공개시스템 이용 매뉴얼을 참조(Q7 답변 참고)

Q13

제품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자기적합확인 해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으로 자기적합확인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해지하면 됩니다.

※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는 방법은 공개시스템 이용 매뉴얼(Q7 답변 참고)

지금까지 파비와 함께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 FAQ 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KC 전파인증 업무별 연락처 안내]	
KC 전파인증 제도	061-338-4711~4715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문의, 적합성평가 신청(변경), 면제	031-644-7400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사후관리(기술기준 준수, KC 전파인증 표시 의무 준수 등)	031-644-7400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미인증 제품 조사·단속	080-700-0074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